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25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김남희 · 김동아 · 서영교
박지원 · 김한규 · 손명수
권칠승 · 박상혁 · 이해식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교정시설의 방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과학적 교정 기법 개발 등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강제구인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도 수용자가 저항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교정행정의 과학화·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교정의 날 제정 등 총칙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교도관의 직무 범위, 원칙 및 지휘·감독체계 등을 명시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정사고 예방 및 제지를 위한 경고, 제지 등 사전적 조치권 및 그 수단으로서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지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형의 감면 등 직무수행 지원 및 보장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교정기법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교정시설 보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행위 제한 및 위반 시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를 관리, 계호(戒護), 처우 및 재사회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정(矯正)시설”이란 교정행정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이에 부대(附帶)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교정시설을 보호하고 그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교정사고”란 화재,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

고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지정 기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정의 날 제정과 운영) ① 국민의 교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도관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의 날 행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의 기준

제6조(직무의 범위)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2. 수용자 이송, 수용구분 및 계호 등 수용관리
3. 교정시설의 경비, 경계, 안전 및 질서유지

4. 수용자 보관금품, 의복 및 급식 관리
5. 수용자 보건, 위생 관리
6. 수형자 분류심사 및 가석방
7. 수용자 생활지도 및 상담
8.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 등 특정 범죄 관련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9. 수형자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석방예정자 취·창업 지원
10. 수형자 교육, 교화프로그램, 사회적 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
11.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직무는 교도관의 직무의 전문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지위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할 책무를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① 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교정사고 예방과 제지) ① 교도관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용자 또는 외부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교정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교정사고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 또는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실의 확인 등)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이 조에서는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수집·작성 등)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작성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신원에 관한 정보
 2. 수용자 처우·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3. 교정사고 예방·제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기타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작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수행의 지원 및 보장

제12조(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소장은 교도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정신건강 보호 및 지원)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심리검사·상담 등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속 교도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치료 등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소송지원) 소장은 교도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변호인 선임·법률 자문,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교도관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석한 사람은 수사 과정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교정사고가 발생하려고 하거나 발생하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교도관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교도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교도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교도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교도관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 관련 법령, 정책, 정보 및 자료의 교환
2. 교도관 등 관련 인력의 교류 및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제18조에 따른 교정기법 및 제19조에 따른 지능형 교정시스템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4. 교정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 및 개발

제18조(교정기법 등의 연구·개발)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적정 처우를 위한 수용관리기법과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처우기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연구단

체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개발, 제2항의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된 교정처우 기법의 검증·보급·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과학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능형 교정시스템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구역

제20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보호하고 그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용도 폐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구체적인 절차,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구역의 고시 및 표시) ① 법무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보호구역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 표지에는 보호구역의 범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점건, 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고 한다) 설치. 다만,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호구역을 촬영·묘사·녹취 또는 측량하는 행위. 다만,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호구역 표지를 이전,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제23조(퇴거명령) 소장은 제22조제1호본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장애물등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제22조제2호본문 또는 제3호본문, 같은 조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장애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 없이 직접 장애물등을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
2. 제22조제2호 본문을 위반하여 보호구역 안에 장애물등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호 본문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을 촬영·묘사·녹취 또는

측량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 표지를 이전·손괴 또는 은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